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10561 제출연월일: 2025. 5. 20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 전처장 소속으로 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, 그 기 능을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성분의 기준 관리 등의 사항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056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"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"를 "「식품위생법」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"로 한다.

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25조(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 등에 관한 자문)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.
 - 1.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
 - 2.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성분의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
 - 3.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
 - 4.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· 홍보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문하는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「식품위생법」 제58조에 따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해당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행

제9조(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제9조(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) ① (생 략)

- ②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 는 식품의 모양,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 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 |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하여야 한다.
- 제25조(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 원회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 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어 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(이 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.
 - 1.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 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

개 정 안

금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품위생법」 제57조에 따른 식품 위생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----.

- 제25조(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 등에 관한 자문)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.
- 1.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 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 한 제도개선 사항
 - 2.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 식의 안전과 영양성분의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
 - 3.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 식의 안전과 영양에 관한 실 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에 관 한 사항
 - 4.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

한 제도개선 사항

- 3.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 식의 안전과 영양성분의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
- 4.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
- 5.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관련된 사 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.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의

안전과 영양관리에 관련된 사

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
이 자문하는 사항

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
- 1. 식품안전 및 영양에 관한 학
- 2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
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 또는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9
 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
 가 추천하는 사람
- 3. 「식품위생법」 제3조제3항 에 따른 식품, 식품첨가물, 기 구 또는 용기·포장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
- 4. 「식품위생법」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
- 5.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하는 공무원
-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(職)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

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.

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・조

 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

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